의 안 번 호	게 157 포
의결 연월일	2019. 10. 22.

-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14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19년 10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9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최근 각종 중대질환 및 암이 증가하면서 직원 건강을 위해 도 및 타·시군에서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 및 가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O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·심리 상담 지원 (안 제4조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